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4. 19.(금) 총 2매(본문1)	
담당 부서	첨단도로 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성섭, 사무관 송철현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 201-3926, 3931	
보 도 일 시		2019년 4월 2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1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·적재중량 위반 집중단속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국의 고속도로,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('19.4.22~26, 5일간) 한다고 밝혔다.
-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, 지자체,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 참여하고
  -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 뿐 아니라 지방도, 시·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 간 단속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차단할 계획이다.
- 이번 일제 합동단속에서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,
  -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 현황 및 사고발생 사례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경찰청, 지자체,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, 화주, 화물운송업자, 주선업자들에게도 과적운송 요구·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송철현 사무관, 김종현 주무관(☎ 044-201-3926, 39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 도로상 운행제한 기준 및 단속업무 개요

## □ 차량의 운행제한 개요

- (목적)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음

\*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

## ○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



-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
- 차량의 폭 2.5미터, 높이 4.0m(고시한 경우 4.2m), 길이 16.7m를 초과하는 차량

## □ 운행제한 단속개요

- (단속내용) 도로법 제77조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단속
- (단속방법) 고정식 검문소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측정 장비를 이용한 차량의 제원 및 계측(적재량 측정 및 재측정) 및 위반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

\* 도로공사의 경우 요금소 진입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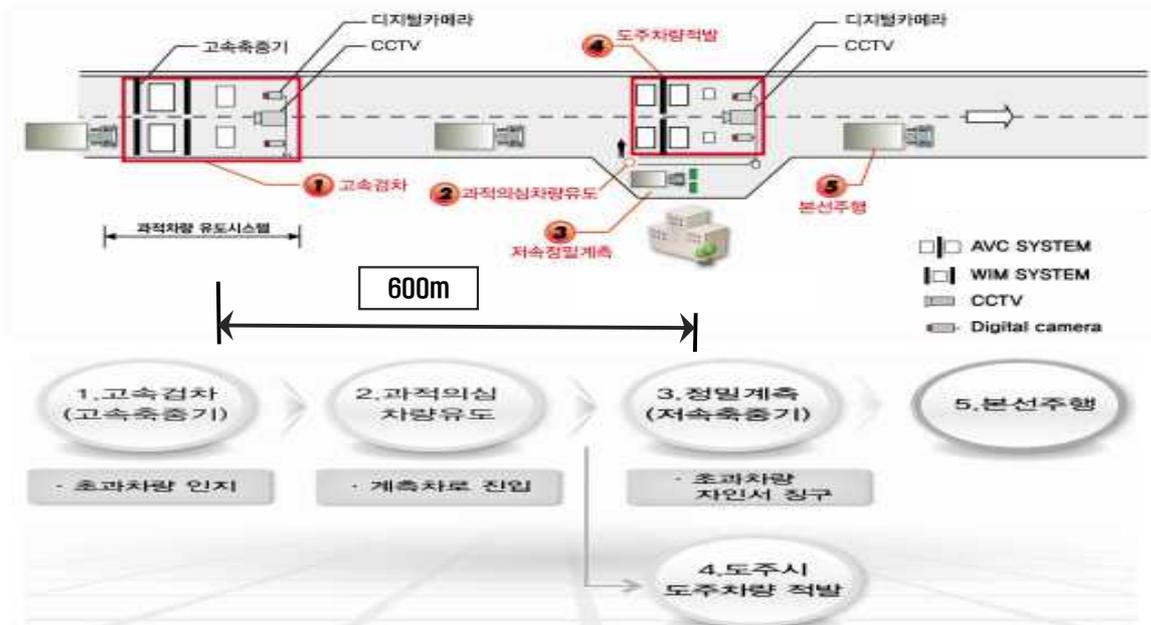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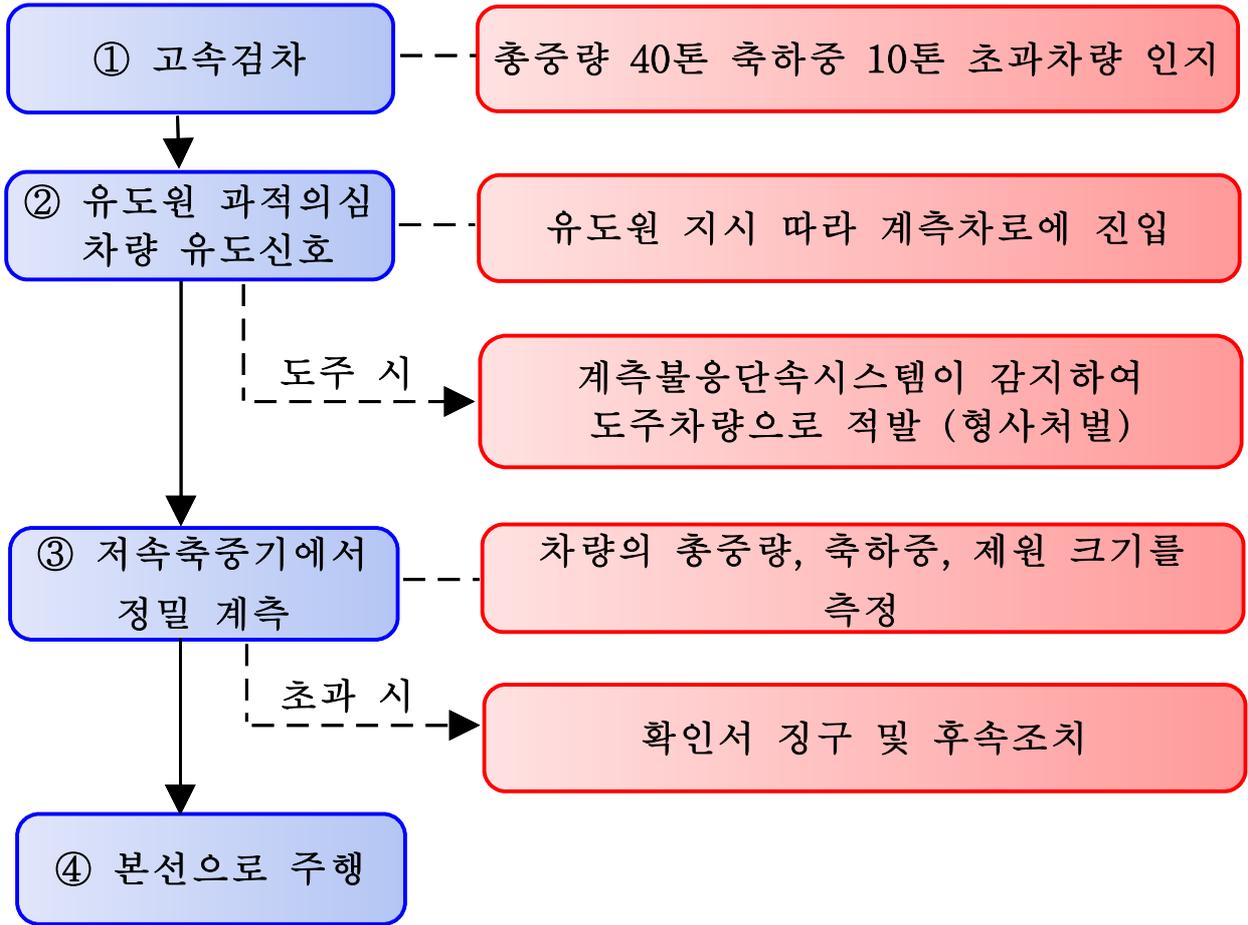
## □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원 및 검문소 현황

구분	운행제한단속원	검문소현황	
		고정식	이동식
합계	1,916	487	187
일반국도	543	25	187
고속국도	1,362	462	-

\* 고속국도 462개소(도공 359개소, 민자도로 103개소)

## 참고 2

##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절차



〈운행제한 단속 검문소 현황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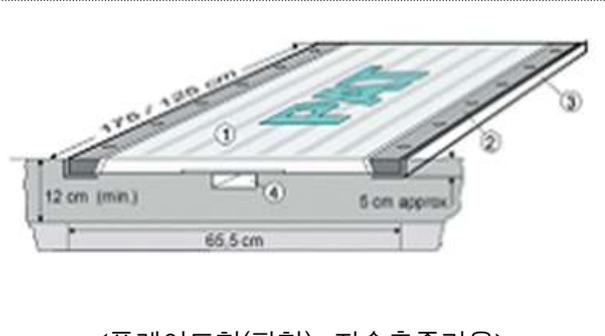
〈국도 고정식 검문소〉



〈저속축중기 3열 패드〉



〈고정식검문소 영상시스템 운영〉



〈플레이트형(판형), 저속축중기용〉



〈이동식 단속지점〉



〈이동식 계측기〉



〈이동식검문소 계측 광경〉



〈이동단속반 점검차량〉